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77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제출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검토보고·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가.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 나. 식생활 및 영양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 서울시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
 -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
 -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0억원 (2020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2 제1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필요성

- 고령화, 1인 가구 및 만성 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나아가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와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제출 사유

-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생활 및 영양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안임으로 시장이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
-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
-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

가. 민간위탁 사무 위탁 내역

- 동 사무는 2004년 식생활정보센터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임.
- 최근 2회차는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모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16. 1. 1. ~ '16. 12. 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최초 위탁(공모)
2차	'17. 1. 1. ~ '19. 12. 31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재위탁(공모)
3차	'20. 1. 1. ~ 22. 12. 31	공모에 의한 선정	재위탁 (공모)

- 최근 3년간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50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직원은 상근 8명(팀장 1명, 팀원 7명), 비상근 3명(센터장, 부센터장, 행정)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도	총사업비	국비	시비	통계목	비고
2017	460,000	230,000	230,000	민간위탁금	재위탁(3년간) '17.1.1~'19.12.31
2018	460,000	230,000	230,000	민간위탁금	
2019	560,000	280,000	280,000	민간위탁금	국비 추가교부로 인한 위탁금 상향조정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

- 동 사무는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회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로 ‘맛동’으로 불리는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의 사무와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다음의 표는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수행 예정인 사무의 내용임.

구 분	내 용
1.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평가	
(1)식생활 관련 현황 분석	-내용: 서울시 식생활 관련 실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서울시 식생활교육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식생활 지표 분석
2. 서울시 식생활 정책 사업 개발 및 운영	
(1)서울시 유아 식행동 (편식) 개선 사업	-대상: 만3~5세 유아 및 부모 -내용: 부모 및 어린이 교육, 소그룹 상담 등 •2018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 •전문인력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관리 •부모 및 유아 교육, 소그룹 상담 운영 •2019년 사업 운영 평가
(2)서울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	[식생활 교육 교재 활용 및 확산 프로그램] -대상: 유아, 주부를 포함한 일반시민 등 -내용: 센터 개발 4종 교재 활용 교육 운영 •오감으로 계절을 먹자2 •음식 친근감 형성 단계별 프로그램 •건강한 식탁을 위한 내 손안의 생선 •음식윤리 [유치원 영양사 및 조리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 유치원 영양사 및 조리사 -내용: 역량강화교육 운영 •음식윤리, 위생관리, 쿠킹클래스, 최신정보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상: 식생활교육 관계자, 일반시민 -내용: 음식윤리 모션그래픽 학습지도안 개발 [초등학생 식생활교육 운영] -대상: 서울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육자

구 분	내 용
(3)맛체험터 및 서울시민 음식학교 운영	-내용: 바른식생활교육교재 및 교구 배포
	<p>[가나다밥상]</p> <p>-대상: 식생활 교육 관계자, 일반 시민</p> <p>-내용: 연령별/주제별 食체험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강의, 시연, 시식
	<p>[서울시민음식학교]</p> <p>-대상: 식생활 교육 관계자, 일반 시민</p> <p>-내용: 연령별/주제별 이론 및 실습형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기클래스, 미각교육, 음식윤리, 식문화 등 <p>※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월1회), 식생활교육 교재 활용(월1~2회), 장 관련 프로그램(5회) 포함하여 진행</p>
3. 서울시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사업 지원	[장하다 내인생]
(1)서울시 영양사업 지원	<p>[영양플러스 및 과일바구니]</p> <p>-대상: 자치구 영양 사업 담당자(25개구)</p> <p>-내용: 영양플러스, 과일바구니 사업</p>
	<p>[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운영]</p> <p>-대상: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p> <p>-내용: 정기 및 비정기 교육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기: 주제 선정 및 교육 커리큘럼 기획 •비정기: 서울시 사업 참여, 교육 소개 등
(2)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p>[서울시 건강음식점]</p> <p>-대상: 자치구 사업 담당자, 해당 업소</p> <p>-내용: 서울시 건강음식점 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염참여 음식점&집단급식소 관리, 저염실천 음식점&집단 급식소 지정 •건강식단제공음식점 인증 및 홍보 •미소운동본부 운영
	<p>[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p> <p>-대상: 시범자치구 20개구</p> <p>-내용: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주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모니터링 등

구 분	내 용
	[덜 짜게, 덜 달게 체험단 공유 플랫폼] -대상: 시범자치구 및 일반시민 -내용: 맛있는공유회(이론강의+요리팀발딩)
	[서울시 나트룸 섭취 저감화 사업 도출] -대상: 식생활, 영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내용: 워크숍 운영
4.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사업	
(1)서울시 식문화 혁신 심포지엄 운영	-대상: 식생활 및 영양 사업 담당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 150명 -기간: 11월 중 -내용: 식생활 및 영양 관련 최신 트렌드 및 정보 교류
(3)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운영	-대상: 유아 및 부모, 20~30대 젊은 성인층 -내용: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 체험교육, 예비 또는 신혼부부 대상 쿠킹클래스 운영
5. 식생활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1)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운영	-내용: 최신 식생활 및 영양 정보 업로드, 서울시 및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후기 게시 등
(2)'건강한 식생활 정보' 시리즈 운영	-내용: 식생활, 영양, 건강 분야별 정보물 시리즈 기획 및 운영 ※네이버푸드판 연계한 정보 확산

다. 추가되는 사무에 대하여

- 집행부는 이들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민간위탁으로 동 사무를 동의 받고자 함.
- 맛 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의 사업은 바른 먹거리, 전통 식문화 등 다양한 음식관련 체험 교육을 개발·실행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맛 체험터를 통해 2개 사업, 서울시민음식학교를 통해 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맛 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사업의 경우 2019년까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던 사업으로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보조금을 통해 운영해 온 사업임. 이에 집행부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시 해당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구분		목적	주요실적(2018)
맛체험터	건강한 식문화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플랫폼		
	가나다밥상	음식의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철/한식(조리)/전통 교육(64회) : 밥 짓는 학교, 산야초밥상, 약선식이 등 9개 프로그램 · 다양성 교육(122회): 사찰음식, 글로벌 식탁, 포스터모던 소셜다이닝 등 19개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식생활(6회): 어린이 맛 콘서트 1개 프로그램
	장(醬)하다 내인생	전통장 담그기	18회(식생활교육강사 등 400명)
서울시민 음식학교	서울시민 음식학교	서울시민의 조리 역량을 높여 식생활관리 능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한 일상식 한식조리(21회): 똑딱반찬, 여름김치, 고추장, 손쉬운 집밥 양념 만들기 등 12개 프로그램 · 다양한 식문화 체험 외국조리(22회) : 베트남 음식, 영화 속 일본 가정식, 수제 페스토 등 9개 프로그램 · 홈베이킹 등 기타조리(21회): 가정식 로스팅학교, 식경험 디자인, No 오븐 베이킹, 등 10개 프로그램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지원의 경우, 서울시 건강음식점,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덜 짜게, 덜 달게 체험단 공유 플랫폼 등의 사무를 추가할 예정임.

사업명	추진내용	추진실적
외식분야 저염참여 기관 참여 확대(25개 자치구)		
서울시 건강음식점 육성	저염참여 음식점 등록·관리	2,129개소
	저염실천음식점 지정	865개소
	건강식단 제공 음식점 인증	10개소
서울시 저염실천 급식소 육성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저염참여 급식소 등록·관리	2,568개소
	저염실천급식소 지정	2,044개소
2.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17개 자치구) (덜 짜게, 덜 달게 체험단 공유 플랫폼)		
어린이 미각교육	미각교육 및 염도 모니터링	7,530명/ 349개소
성인 저염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부특공대	534명
	아빠의 식탁	319명
	맛공유회	55명/ 3회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¹⁾는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무는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1)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하며, 관련하여 과학적인 평가와 조사업무가 필요한 사무로 판단할 수 있음. 전 연령대에 걸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는 집행부의 역량 보다는 민간의 전문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임. 이에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4 종합의견

-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기존사업의 추가) 등과 관련하여 사업의 수행을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고(민간위탁과 보조금 혼재) 추가되는 사업들이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 등임을 판단해 볼 때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서 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변 호	97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무로,
- 나. 식생활 및 영양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0.1.1. ~ 2022.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 서울시 식생활 및 영양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 서울시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식생활 정보 플랫폼 운영
 - 맛체험터 및 서울시민음식학교 운영
 -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0억원 (2020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2 제1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필요성

- 고령화, 1인 가구 및 만성 질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나아가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모와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 이인선 (☎2133-4739)